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임홍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본고는 ‘규범 문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때로는 같은 의미로 때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온 ‘학교 문법’이나 ‘표준 문법’이란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 문법’이나 ‘학교 문법’ 또는 ‘처방 문법’이란 술어는 국어학 개론이나 국어 문법론 등의 서두를 장식하는 기본 개념들로, 그들 개념 자체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의 하나는 현대 언어학의 성격과 관련된다. 현대 언어학은 그 출발에서부터 규범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취해 온 것이다.

20세기초 소쉬르(Saussure, 1916:20)는 언어학은 바른 말이나 우아한 말뿐만 아니라 모든 형식의 언어 표현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이다(Nida, 1946/1976:2)는 언어학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강령의 하나로 삼았다. 또 호케트(Hockett, 1958:5)에 의하면, 언어 분석가는 “바른(correct)” 형식뿐만 아니라 “잘못된” 형식도 관찰·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이온스(Lyons,

1969:42-3)는 글말이나 입말에서 특별히 어떤 형식이 더 순수하고 더 옳다고 해야 할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음도 천명하고 있다.

언어학을 하는 것은 바로 언어 사실을 있는 대로 기술하는 것이므로, 어떤 언어 형식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것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과학이 하는 일이 아니다. 자연히 규범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규범 문법은 그 이름만으로도 진지한 언어학이 될 수 없었다. 20세기의 선입견이다.

다른 이유의 하나는 우리에게 특별히 “규범” 문법이라고 해야 할 큰 전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기술은 매우 최근에야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로스(Ross, 1877)나 리델(Ridel, 1881)이나 언더우드(Underwood, 1890)을 그 시작이라 하면, 우리 문법 연구는 이제 백년이 좀 넘은 것이고, 최광옥(1908)이나 유길준(1909)나 주시경(1910)을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채 백년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처음으로 꼽히는 로스(Ross, 1877)은 함경도 방언을 재료 언어로 하고 있다. 문법 기술의 첫 시작이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별히 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 없었으므로, 굳이 언어 연구는 규범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이 오랫동안 단일한 체계의 통일된 문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1985년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제1종 교과서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문법의 내용이 문법 교과서 저자에 따라 각양 각색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문법이라는 것이 그 개념적 특징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동안의 문법서나 언어학 사전 등에 ‘규범 문법(normative grammar)’이나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나 혹은 ‘표준 문법’과 같은 술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성격지어졌는가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한두 가지 예를 제외하면 “표준 문법”이란 술어의 쓰임을 보기 어려우므로,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의 정의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살펴기로 한다.

2.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에 대한 인식

규범 문법이란 술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승녕(1949)인 것으로 여겨진다.¹⁾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 이승녕(1949:50)에서의 '규범 문법'

- 가. 문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규범 문법ियो, 또 하나는 역사 문법이다.
- 나. 규범 문법이라 함은 이 같이 글을 써야 된다는 명령의 문법ियो 학교의 교과서식 문법이다.
- 다. “밥 먹구 곧 앉아 공부허지 마라.” 같은 문장은 경성어로서 볼 때 언어의 속임없는 실태이다. 그러나 규범 문법은 “밥 먹고 곧 앉아 공부하지 마라.”라 쓰라고 명령하는 것이니 오늘날까지 나온 수많은 문법이 규범 문법이라 하겠다.
- 라. 그러나 학문으로서 필요한 것은 규범 문법도 물론이려니와 언어 실태 그대로의 형태 연구도 필요한 것이다. “먹고”를 “먹구”라 하여도 여기 언어의 발달 과정의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이니 규범 문법 아래 귀중한 산[活] 언어의 형태가 희생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1가)에서 규범 문법은 역사 문법과 대가 된다. (1라)에서 기술 문법적인 연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1가)는 다소 허술한 언급이다. (1나)는 규범 문법에 대한 성격 구명이다. 규범 문법은 학교의 교과서식 문법이고 명령의 문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1나)에 “글”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녕(1956나)에서 “[규범 문법은] 현실의 말이 어찌 발달되든 간에 이

1) 최현배(1937/1959:714)에는 “규범 과학”이라는 것과 “기술 과학”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규범 과학은 논리학을 말한다. ‘규범 문법’적인 개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같이 써야 한다는 당위의 문법ियो, must do 문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규범 문법은 거의 표기법상의 규범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송녕(1956가:9)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도 나타난다.

(2) 이송녕(1956가)에서의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

- 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국어 문법은 규범 문법이고 학교 문법이다.
- 나. 표준어로 제정된 바에 따라 이에 맞도록 글을 잘 쓰게 하는 문법이다.
- 다.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명령하는 문법이다. 맞춤법은 문법 체계에 맞도록 꾸며진 것이니, 우리는 이 맞춤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2가)에서도 우리는 학교 문법과 규범 문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다. “규범”이라는 것을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면, (2가)는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을 동일시한 것이다. (2나, 다)는 규범 문법의 내용 혹은 맞춤법이나 표준어와 규범 문법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이송녕(1956나:43)에서는 맞춤법과 표준어를 규범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²⁾ 이는 규범의 내용이 나 기준을 명시한 아주 드문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3) 이송녕(1949, 1956가, 나)에 대한 의문

- 가. 규범 문법은 학교 문법과 어떻게 다른가?
- 나. 규범 문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인가?
- 다. 규범 문법은 오직 글을 잘 쓰는 것에만 관련된 것인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법의 종류와 그 성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김민수

2) 이송녕(1956나)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3가지이다. 제3의 근거는 자기류의 철자나 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나, 관련성이 크지 않아 여기 소개하지 않는다.

(1960:23-4)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4) 김민수(1960)에서의 실용 문법과 규범 문법

- 가. 실용 문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현실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서, 언어 사실의 객관적 파악보다도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써라.” 판단 명령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흔히 학교 문법(school grammar) 혹은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이라고 부른다.
- 나. 규범 문법에서는 언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공으로 된 표준어나 정서법의 규정과 정책면의 요구 등에 비추어 시비를 가린 다음, 이 모든 당위의 사실을 교화하기 위하여 교육적 방법이 적용된다.
- 다. 그 체계의 조직으로 말하면; 학문 문법이 귀납적이라면, 규범 문법은 연역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는 자국어나 외국어의 학습에 소용되며, 후자는 언어학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일면이 된다.

(1나)나 (2나)와 달라진 것은 규범 문법이 적용되는 것에 ‘글’만이 아니라 ‘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2나)에서도 ‘표준어’가 언급되었으나, 거기서 그것은 ‘말’이 아니라 ‘글’의 문제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4나)에는 규범 문법의 내용에 정책적인 요구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2)보다 넓어졌다. (4다)에서는 규범 문법의 용도가 명시되고 있다. 규범 문법은 자국어나 외국어 학습에 소용된다는 것이다.

(3)에서 제시된 의문 가운데 (3나)와 (3다)는 좀더 포괄적이 되었으나, (3가)의 두 문법은 여전히 구별되지 않는다. 문법의 종류를 나타낸 도표에서 보아도, 실용 문법이 바로 규범 문법이며 또 그것이 곧 학교 문법이다. 이 둘의 차이가 지적된 것은 김민수(1969:16-17)에서이다.

(5) 김민수(1969)에서의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

가. 실용 문법은 연구 용도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서 바로잡으려고 지시·명령하는 규범 문법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학교 문법으로 나뉜다. (밑줄 필자)

나. 이 양자는 같은 성격이나 전자는 문법의 내용 체계를 본 것이며, 후자는 문법의 용도를 보고 이른 명칭이다. (밑줄 필자)

(5가)에 의하면, 규범 문법은 일정한 기준에서 바로잡으려고 지시 명령하는 문법이며, 학교 문법은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문법이다. 두 문법의 차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5)에 적용된 비교 대조의 기준이 두 가지라는 것이다. (5가), (5나)에서 보면 학교 문법은 용도에 의하여 성격지어지는데 (5나)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기준이 도입되어 규범 문법은 내용 체계에 의하여 성격지어진다.³⁾ 두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두 가지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두 문법이 정확하게 구별될 수 없다.

안병희(1965)에서도 두 문법의 성격은 거의 같다. 다만 규범 문법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제시한 것이 다소 차이지는 점이다.

(6) 안병희(1965)에서의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

가. 구식의 문법이 객관적 사실의 파악보다는 실용 위주인 규범의 제시인 데 반하여, 이 새로운 문법은 객관적 사실로부터 규칙을 얻고 그것을 체계화하지만 규범은 제시하지 않는다.

나. 구식의 문법을 규범 문법(normative grammar) 또는 어린이와 외국인 등 언어 습득자에게 교수되므로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라 부르고, 새 문법을 scientific grammar(학문 문법)이라 한다.

3) (5가)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학교 문법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라 볼 수 없다.

(6나)의 문맥은 (5가)의 문맥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규범 문법이 바로 학교 문법이며, 학교 문법이 바로 규범 문법이다. 동아문화연구소 편(1973:134)의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문법”이란 정의도 이 계통을 잇는 것이며,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정의도 이 계통의 것이다. 규범이 학교 교육에도 소용되므로 ‘학교 문법’이라고도 한다는 언급도 같다. 학교 문법과 규범 문법은 그 성격이 거의 구별되지 않고 있다.

3. 학교 문법의 성격과 기준

이러한 정의나 구명에서 ‘학교 문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교과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기술된 체계나 술어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을 말하는 것인가?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인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인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문법인가? 규범 문법에 관한 개념적인 언급에서 ‘학교 문법’은 매우 추상적인 대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학교 문법이 있고, 고등학교 문법이 있고 또 대학에서 배우는 문법도 있다. 이 중 학교 문법은 어디에서 가르치는 어느 문법을 말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가진 고등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 문법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교과서의 형태로 나와 있다.

그 두드러진 성격을 추출하여 학교 문법을 우선 다음과 같이 성격짓기로 한다.

(7) 학교 문법의 성격

가. 학교 문법은 가장 소박한 의미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다.

나. 학교 문법의 교수 대상은 학생이다.

다. 학교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 사실을 다룬다.

라. 학교 문법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7가)는 가장 소박한 의미인 동시에 가장 원리적인 성격이다. 학교 문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법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된 교과서의 문법을 말한다. (7가)를 기초로 한 중학교 문법이나 대학의 문법도 학교 문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나)는 학교 문법의 교수 대상을 말한 것이다. 학교 문법의 교수 대상은 학생이며 그것도 고등 학생이다.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외국인이 고등학교 문법을 배우다고 하여도 그것 역시 학교 문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고등 학생에게 학교 문법을 교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일반의 문법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 범위가 한정된다. (7다)는 학교 문법이 다루는 문법 현상을 한정한 것이다. 이론이 분분한 현상이나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현상은 학교 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7라)는 학교 문법의 체계성을 말한 것이다. 단편적인 현상만을 다루어서는 학교 문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우선은 기본적인 문제가 선명해진다. 그러나 이에는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8) 학교 문법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

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 학교 문법인가?

나. 학교 문법이 되려면 얼마나 체계적이어야 하며, 설명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8가)는 학교 문법이 내용에 관한 언급 없이 정의될 수 있는가를 문제삼은 것이다. 가령 학교 문법이 통일되기 이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문법도 학교 문법인가 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문법 술어나 체계가 문법가마다 달랐다.

그렇더라도 그 각각은 학교 문법인가? 문법 교과서 저자들은 그것이 학교 문법임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의 하나를 (2가)에서 볼 수 있다. 통일 전의 학교 문법서들은 (7)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가 강하게 드러나 학교 문법으로서는 상당한 결함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하여 “최현배 문법”으로는 어떻고, “이희승 문법”으로는 어떻고 하는 꼬리표가 달리는 일이 많았다. 그것은 학교 문법이 라기보다는 개인 문법이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7)에 부가하기로 한다.

(7)마. 학교 문법은 문법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능한 한 배제한다.

(8나)는 학교 문법 집필을 위한 지침이나 용어집과 같은 것이 ‘학교 문법’에 속하는 것인가를 문제삼은 것이다. 관련 대상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학교 문법의 집필 지침이나 용어집

가. 문교부 문법 용어 제정위원회 (1949), 「문법 용어」, 유인물. 김민수(1973:982-992) 참조.⁴⁾

나. 문교부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1963), 「학교 문법 통일에 대하여」, 1963. 7. 25. 공포.⁵⁾ 문교부 편수자료 5(1964. 6.), 김민수(1973:992-1004) 및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37책 참조.

다. 학교 문법 세부체계 통일협의회(1967), 「문교부 제정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른 세부 체계에 대하여」, 김민수(1973:1004-1012) 참조.

4) 김민수(1973:982)에 의하면, 이는 1949년 7월 문교부 문법용어 제정위원회에서 편수국장 주관 하에 심의·제정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갈래로 된 학교 문법 용어집이다. 모두 292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1968년 2월까지 주로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5) 9품사와 252개의 용어로 된 학교 문법 통일 방안으로 196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그 용어는 (9가)를 개정하여 단일화한 것이다.

(9가)는 두 가지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문법 용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법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1968년까지의 문법서는 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제시된 것은 용어뿐이나 그것을 통하여 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⁶⁾ 그러나 (9나)에는 “품사 및 용어 일람” 외에도 상당한 양의 설명이 있다. (9다)에는 문장 성분, 보어의 범위, 조사의 분류, 어미의 분류, 용언의 시제, 문장의 종류 등 12개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9가)에 대해서는 설명의 결여를 결함으로 지적할 수 있고, (9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결함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내용은 학교 문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 문법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은 분명히 학교 문법적인 것이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문법 술어의 목록에서도 문법적인 체계의 대강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8가)와는 반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도 그 내용에 따라 학교 문법의 성격을 띠 수 있다. 따라서 넓게 보아서 (9나)도 학교 문법에 속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9가)와 (9다)도 학교 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문법에는 소재 언어의 문제도 있다. 특수한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이 학교 문법의 소재 언어가 되는 일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표준 방언이 학교 문법의 소재 언어가 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9가, 나)는 국가 기관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9다)는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저작이 학교 문법서로 쓰일 수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학교 문법이 반드시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7)에 부가하기로 한다.

(7) 바. 학교 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어를 그 소재 언어로 한다.

사. 학교 문법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6) 이에는 ‘관계대명사, 강세대명사, 감탄대명사, 비인칭 동사’와 같은 아주 생소한 술어도 상당수 있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어의 문법을 다루는 일이 있는 것은 (7바)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4. ‘규범 문법’의 성격과 연원

규범 문법에 대한 국내에서의 인식은 그것이 “명령”의 문법이라는 것이다. (1나)에서는 “이 같이 글을 써야 된다는 명령의 문법”으로 정의되고 있고, (4가)에서는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써라.”와 같은 명령을 하는 문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법에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라고 강제를 한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자명한 것은 아니다. 현대의 문법은 기술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0) 가. 나가 느그들헌티 이런 말을 다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다 한다)
 나. 말로 해가가 우쨌디야? (말을 해 가지고 어찌할 것이야?)
 다. 맨드롬할 때 호록 드리잡사. (따뜻할 때 빨리 드세요)

(10)은 지역 방언적인 예 셋을 보인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 규범 문법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하라”하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명령을 한다는 것인가? 여기서 혹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가’는 ‘내가’와 같이 쓰거나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법에 ‘나 + 이/가 ⇒ 내가’와 같은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그들헌티’는 어디서 어떻게 ‘너희들한테’라고 말해야 한다고 할 것인가? 이는 분명히 문법의 차원을 넘어선다. 현대의 문법에는 이들을 다룰 수 있는 부문이 없다. ‘한다, 해가가, 맨드롬하다, 드리잡사’ 등에 대해서도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범 문법에 대한 성격을 보기로 하자.

- (11) 미야치〔宮地裕〕(1971:161)의 ‘규범 문법’

유럽에서는 중세 그리스도교의 권위 아래에서 라틴어를 언어의 규범으로서 교수·연구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규범 문법의 전통이 생겨났다.

(12) 뒤보아(Dubois) 외 (1973:76-7)의 ‘규범 문법’

가. 규범 문법은 언어 층위에 대한 구별(교양 있는 사람의 언어, 속어, 이언[俚言] 등)을 기초로 하여 그 중 하나를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를 “좋은 말씨”, “좋은 어법”으로 권장한다.

나. 이 결정은 순수히 언어적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문화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참조의 언어로 선택되는 언어는 위신이나 권위를 누리는 사회 계급의 언어이다.

(13) 허들턴(Huddleton) (1974:233-4)에서의 ‘규범 문법’

가. 처방적 전통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우리가 문체상의 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다.

나. 대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문체는 격식적, 비격식적, 중립적 문체로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있어 처방적 전통은 자주 비격식체에 속하는 구성을 실제 문법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고 취급하는 것이다.

(11)은 규범 문법의 연원이 라틴어의 교수나 연구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라틴어를 언어의 규범으로서 교수·연구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규범 문법의 전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다소 부정확하다. 라틴어가 또 다른 어떤 것의 규범이었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에서는 규범 문법이 사회 방언 중의 어떤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모방해야 할 말로 규정함을 말하고 있다. (13)에서는 이를 문체의 문제로 보아 비격식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격식체라는 것을 사회 방언의 일종으로 볼 때, (13나)는 (12나)와 그 성격이 같아진다.

이들 일련의 성격은 규범 문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표준어 선택과 깊은 관

련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역 방언보다는 사회 방언 중에서 권위를 가지는 어떤 방언을 표준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진다. 이러한 관련 아래에서라면 규범 문법이 “이렇게 쓰라, 이렇게 말하라”와 같이 명령하는 문법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규범 문법을 문법 규칙으로만 이해한다면, 규범 문법의 영향은 그렇게 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⁷⁾ 이 점에서 다음을 보기로 한다.

(14) 김민수(1960:14)

가. 하나의 과학으로 대우받기 전에는 문법의 정의도 일반적이었으며, 그 내용도 규범 문법으로 라틴 문법의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부문으로 되었다.

- 나. ① orthography 철자법(정서법) ② etymology 어형론
 ③ syntax 통사론 ④ prosody 운율론 ⑤ punctuation 구두법⁸⁾

라틴 문법이 “정서법”과 “구두법”을 주요 부문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규범 문법의 명령적 성격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해 준다. 정서법이란 그 성격상 본래 바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며, 그 중에 바른 것을 쓰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또 정서법이 표준적인 언어의 정립이나 상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규범 문법이 (12)나 (13)에서와 같이 권위를 가지는 사회 방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 컬런[Cullen] (1994:233-4)는 처방적 규칙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가) 다른 언어에 대한 잘못된 유추에 의한 것:예, “It’s me.”가 아니라 “It’s I.”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나) 논리적 근거에 의하여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예, “I didn’t nothing.”은 어느 경우이나 “I did something.”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 (다) 화자의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에 대한 지식에 의한 것:예, “My daughter may can do that.” “I ain’t going home this week.” 등을 바른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8) 이는 19세기 중엽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3분법으로 바뀐다. 김민수(1960:1 및 주 7) 참조.

이후, 라틴 문법적인 규범 문법에서는 정서법과 구두법이 제외되게 되었다. 규범적인 성질을 무엇보다 강하게 가지는 부분이 제거된 것이다. 그 경우 남은 것은 문법적인 현상과 문법 술어 및 체계와 설명법과 같은 것이다.⁹⁾ 이제 규범 문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15) 규범 문법의 성격

- 가. 규범 문법은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 아니다.
- 나. 규범 문법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학생이 아니다.
- 다. 규범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 사실을 다룬다.
- 라. 규범 문법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규범 문법은 문법 사실에 관하여 문법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바. 규범 문법은 모범이 되는 언어나 표준어를 그 소재 언어로 한다.
- 사. 규범 문법은 공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7가-사)와 비교할 때, (15)의 규범 문법은 학교 문법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15가, 나)의 사실과, 규범 문법이 공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15사)의 사실만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문법 사실을 다루는 것이 같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같다. (7마)와 달리 (15마)는 다소 강화되었다. 규범 문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문법적인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허용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15바)는 규범 문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영

9) 표준어나 철자법의 문제가 문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표현이 문법적인가 비문법적인가 하는 문제, 또는 어떠한 어법이 정확한 것이며, 올바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며, 논란의 여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판정을 내리는 기관으로는 프랑스의 Academie Française(1635년 설립)와 이탈리아의 Accademia della Crusca(1582년 설립)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수용 가능한 표현과 어휘, 발음 및 문법적 구성에 대하여 규범적 권위를 가지는 출판물을 내고 있다.

한 것이다.¹⁰⁾ 학교 문법이 특정한 계급의 언어를 모범으로 하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므로, (15바)도 (7바)와는 다소 차이를 가진다.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이 학교 문법과는 별도로 편찬되어 있을 때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현재 규범 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편(1996)의 ‘고등학교 문법’이다. 이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편(1985/1991)의 ‘고등학교 문법’을 기초로 개편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문법의 성격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편찬의 목적이 그렇고, 그 적용 대상이 그렇다. 고등학교 문법이 규범 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리 마련된 문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정식의 ‘규범 문법’이 편찬될 때까지는 이 문법이 잠정적으로 규범 문법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 잠정적인가? 고등학교 문법은 5년을 주기로 개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규범 문법을 5년을 주기로 개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쉽게는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¹¹⁾

5. ‘표준 문법’의 의미

“표준 문법”에 대해서는 그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언어학 사전에서도 “표준 문법”이란 표제어는 찾기가 어렵고, 일반 문법서나 사전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금성관 국어대사전[1991]이나 한글학회(1992), 국립국어연구원(1999)에도 “표준 문법”은 그 올림말을 찾을 수 없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규범 문법”항의 ‘동의어’란에도 “명령 문법, 실용 문법” 정도가 있을 뿐이고, ‘참고어’란에도 “기술 문법, 설명 문법, 역사 문법” 정도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용례이다.

10) 여기서 인용한 것으로는 (12가, 나)가 참조된다.

11) 정규의 문법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불변적인 규범 문법 사항에 대한 처리법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기 규정일 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규정 속에 암시되어 있는 문법 사항은 불변적인 규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임홍빈 (1998:419-422) 참조 요망.

(16)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1996]의 “문법”항 중 “종류”란에서 ‘규범 문법’에 대한 풀이

규범 문법:언중이 말하고 글로 쓰는 데 의거할 수 있는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글은 이렇게 쓰고, 말은 이렇게 하라는 당위(當爲)의 문법이고, 명령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표준 문법·학교 문법도 규범 문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밑줄 필자)

(17) 이극로(1930)에서의 용례

가. 표준어가 서고 철자법이 통일된 자학(字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글이 제 값을 가지게 못 된다. 그 자학이 이루어질려면 먼저 표준 문법과 표준 사전이 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¹²⁾ (한글, 띄어쓰기 및 밑줄, 필자)

나. 표준할 문법과 사전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쓴 글 가운데에 같은 글자로 위에 쓴 자와 아래에 쓴 자가 다르고, 같은 사물에도 이 끝 저 끝의 말이 달라서 서로 뜻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다. (한글 및 띄어쓰기, 필자)

다. 십수종의 조선어 문전이 출판되었으나 그 내용을 간단히 비평하자면, 혹은 서양말 문법틀에, 혹은 일본말 문법틀에 조선말을 그냥 끼웠으며, 혹은 순수한 과학적 방법으로 시험하였으나 실재를 넘어 돌보지 아니한 폐(弊)도 있거니와, 이론 자체도 충분치 못한 점이 적지 아니하다.

(18) 문법서의 명칭

가. 장하일(1949), 『표준말본』, 1-2, 3, 종로서관.

나. 정인승(1949/1956), 『표준중등말본/표준고등말본』, 을유문화사/신구문화사.

다.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6)의 “표준 문법”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16)

12) 여기서 ‘자학(字學)’은 어휘에 대한 연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위의 문법이고 명령의 문법이라는 것 정도이다. “표준”이라는 말은 특수한 술어적 의미로보다는 일상적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정도나 가치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대표할 만한 것”이거나 “따라 본받을 만한 것”이다. 여기서는 아마도 후자의 의미가 더 적합할 것이다. (17나)의 “표준할 문법”에서 “표준”은 일상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17가)의 “표준 문법”은 (17다)를 참고로 하면, 모범이 되어 우리가 따를 만한 문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8가, 나)의 “표준”도 일상적인 의미의 수준을 넘는 것이 아니고, (18다)도 고등학교의 통일 문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표준”도 일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표준 문법”의 의미를 “표준할 문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표준할 문법이란 의미를 강하게 가진다. 교육적인 문법서를 쓸 때에 표준이 되는 문법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준 문법”은 모범으로 따를 만한 문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옳고 그름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여러 문법 중에서 그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잘못이라는 배타적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모범이 되는 문법이라는 의미를 띤다. 따라서 그것은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문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 문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모범적인 문법을 말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는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된다.

6. 결 론

20세기의 언어학은 언어 사실을 있는 대로 기술하는 것이라는 기술적인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규범 문법이나 처방 문법이라는 것은 진지한 언어 연구에 방해가 될 뿐인 것으로 보는 그러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규범 문법이나 학교 문법 또는 처방 문법과 같은 것은 그 개념조차 분명히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규범” 문법이라고 해야 할 큰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고등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이 오랫동안 단일한 체계의 통일된 문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의 결합도 작용한다. 정확하게 학교 문법이나 규범 문법의 차이를 언급한 예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리적인 성격을 중시하였다. 학교 문법은 원리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한 문법이거나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 사실을 다루게 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문법 사실에 관하여 문법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능한 한 배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어를 그 소재 언어로 하는 반면 반드시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규범 문법은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문법과 차이를 가지며, 공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 문법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법 사실에 관하여 문법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학교 문법과는 다소 차이 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 문법이 라틴 문법의 전통을 잇는 문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그동안 잘 주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규범 문법은 그동안 흔히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문법, “이렇게 쓰라,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문법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무엇을 쓰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냐 할 때 그 내용이 되는 것은 표준어나 정서법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것이다. 이는 라틴 문법이 정서법과 구두법을 포함하는 5부 체제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표준 문법”은 그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 “표준 문법”의 “표준”은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표준할 문법’의 의미이다. 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표준할 문법이란 의미이다. 표준 문법”은 모범으로 따를 만한 문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옳고 그름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지 않으며, 그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잘못이라는 배타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문법은 아니며, 공적인 강제

력을 가지는 규범 문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모범적인 문법을 말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다소 복잡한 현상이 다루어질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금성환 국어대사전[1991] ⇒ 김상형 편(1991)
- 김민수(1960). 『국어 문법론 연구』. 통문관.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37책. 탑출판사.
- 김민수(1969). 『국어 구문론 연구』. 유인본.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37책. 탑출판사.
-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상형 편(1991). 『국어대사전』. 금성사.
- 나이더[Nida. E. A.] (1946/1976:13판).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남기삼·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1996). 『두산동아 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 뒤보아[Dubois] 외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 (이토[伊藤] 외 번역 (1980). *ラールス言語學用語辭典*.大修館書店)
- 디닌[Dinneen. F. P.](1967). *An Introduction to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라이온스[Lyons](1969).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로스[Ross. J.](1877). *Corean Primer*. Shanghai.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1책. 탑출판사.

- 리델[Ridel. Felix-Clair](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6책. 탑출판사.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사들(1881).
- 마츠무라[松村明] 편(1971). 『日本文法大辭典』. 明治書院.
- 무닝[Mounin. G.](1974). *Dictionnaire de la linguis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문교부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1963). 「학교 문법 통일에 대하여」. 1963. 7. 25. 공포. 문교부 편수자료 5(1964. 6.). 김민수 (1973:992-1004) 및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37책 참조.
- 문교부 문법용어 제정위원회 (1949). 「문법 용어」. 유인물. 김민수(1973:982-992) 참조
- 미야치[宮地裕]. “規範文法.” 마츠무라[松村明] 편(1971). 161.
- 밀로이[Milroy. L.] & 밀로이[Milroy. J.](1992). “Prescriptive Grammar”. 브라이트[Bright. W.] 외 편 (1992). vol. 3: 270f.
- 브라이트[Bright. W.] 외 편(199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국어문제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1991).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 소쉬르[Saussure. F. de](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안병희(1965). 『문법론』. 어문학연구회 편(1965). 108-146.
- 애셔[Asher. R. E.] 외 편(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Press.
- 어문학연구회 편(1965). 『국어학 개론』: 강좌. 수도출판사.
- 언더우드[Underwood. H. G.](1890). 한영문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2부 제3책. 탑출판사.
- 유길준(1909). 『대한문전』. 동문관. [참고]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2

책. 탑출판사.

- 이극로(1930). 「표준 문법과 표준 사전」. 『조선일보』 1930. 11. 19.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3부 제10책. 탑출판사.
- 이승녕(1949). 『고어의 음운과 문법』. 서울문화당.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42책. 탑출판사.
- 이승녕(1956가). 『고등 국어문법』. 을유문화사.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34책. 탑출판사.
- 이승녕(1956나). 「새 문법 체계의 태도론」: 고등문법/초등문법 지침서 No. 1(유인본). 을유문화사.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34책. 탑출판사.
- 임홍빈(1998). 「한국어 사전에서의 규범성」. 임홍빈(1998). 407-439.
- 임홍빈(1998). 『국어문법의 심층』 3: 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장하일(1949). 『표준말본』. 1-2. 3. 종로서관.
- 정인승(1949). 『표준중등말본』. 을유문화사.
-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4책. 탑출판사.
- 최광옥(1908). 『대한문전』. 안악면학사.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1부 제2책. 탑출판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컬런[Cullen. C.](1994). "Prescriptive and Descriptive Grammar." 애셔[Asher] 외 편 (1994). 3310f.
-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사들(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참고] 『역대한민국문법대계』, 제2부 제6책. 탑출판사.
- 학교문법 세부체계 통일협의회(1967). 「문교부 제정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른 세부 체계에 대하여」. 김민수(1973:1004-1012) 참조.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허들턴[Huddleton. R.](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호케트[Hockett, C.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